|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 의결<br>연월일 | 2016. . .<br>(제 회) | |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출자 | 국무위원 최양희<br>(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 제출 연월일 | 2016. . . |

## 1. 의결주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대리배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취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요금별납우편물 등의 취급방법을 부령에서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 (안 제25조 ~ 제31조)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별납, 우편요금계기, 수취인부담,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도록 함

나. 우편요금 반환범위 확대(안 제35조제1항제4호)

우편물 접수 후 발송전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접수 취소하는 경우 우편요금 반환 근거 신설

다. 수취인의 우편물 주소지 변경 청구(안 제36조의2)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송달을 통한 우편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수취인도 배달 주소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라. 배달의 특례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호, 제10호, 제11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특례사항에 본인 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 교부·배달, 공동주택 대리배달 및 수취인의 수취주소 변경 청구한 곳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2호, 23호 및 24호를 각각 같은 항 제26호, 제30호 및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금별납 우편물의 종류 등 결정·고시

23.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금계기 우편물의 사용신청 등 결정·고시

24.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이용신청 등 결정·고시

25.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금후납 우편물의 종류 등 결정·고시

27. 제36조의2제2호에 따른 수취인이 수취 주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고시

28. 제42조제4항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의 결정·고시

29. 제43조제3호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통지방법, 보관기간 등 결정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중 등기우편물의 반환취급

제11조제4호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계기의 사용신청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환부한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및 환부취급”을 “및 반환취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이용신청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을 “우편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환부한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우편요금등의 환부)”를 “(우편요금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부하는”을 “반환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편물 접수 후 우체국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않은 우편물을 발송인의 요청에 의해 접수 취소한 경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부청구”를 “반환청구”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우편물 주소등의 변경 및 환부청구)”를 “(우편물 주소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로 하고, 제36조의2 전단 중 “발송인”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환부를 발송”을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편물 발송인은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청구

2. 우편물 수취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물에 한해 수취 주소 변경 청구

제36조의3의 제목 “(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를 “(열어보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우편물의 범위)”로 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중 “제43조제1호 및 제5호”를 “제43조제1호, 제5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를 “제43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등기우편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법

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4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취인의 일시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거나,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3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수취인의 일시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공동주택 내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에 배달하는 경우. 다만,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36조의2제2호에 따라 수취인이 수취주소를 변경 청구한 경우로서 수취인이 변경 청구한 곳으로 배달하는 경우

##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부터 제30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제36조의2, 제43조제11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 |
| 1. ~ 21. (생 략) | 1. ~ 2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2.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금별납 우편물의 종류 등 결정·고시 |
| <신 설> | 23.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금계기 우편물의 사용신청 등 결정·고시 |
| <신 설> | 24.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이용신청 등 결정·고시 |
| <신 설> | 25.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금후납 우편물의 종류 등 결정·고시 |
| 22. (생 략) | 26. (현행 제22호와 같음) |
| <신 설> | 27. 제36조의2제2호에 따른 수취인이 수취 주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고시 |
| <신 설> | 28. 제42조제4항에 따른 무인우 |

| | |
|---|---|
| | 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의 결정·고시 |
| <신 설> | 29. 제43조제3호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통지방법, 보관기간 등 결정 |
| 23. (생 략) | 30. (현행 제23호와 같음) |
| 24. (생 략) | 31. (현행 제24호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br>1. (현행과 같음) |
|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우편물중 등기우편물의 환부취급 |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취급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환부의 청구 | 4. ---------- 반환------- |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① (생 략) |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 |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

| | |
|---|---|
| 편물의 종류·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제26조(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① (생 략) | 제26조(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계기의 사용신청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①·② (생 략) | 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 발송인은 우편요금등 및 환부취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 ---------- 반환한다. ---------- 및 반환취급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이용신청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우편물 발송인은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 |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①---------- 우편물---------- |

| | |
|---|---|
| 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 | ----------<br>----------<br>----. |
| <신 설> |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①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 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①----------<br>---------- 반환한다. |
| ②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송한 경우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 ②----------<br>---------- 반환----------<br>----------<br>----------<br>----------<br>----------<br>----------<br>----------<br>----------<br>--------.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
| 제35조(우편요금등의 환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하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①---------- 반환하는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우편물 접수 후 우체국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않은 우편물을 발송인의 요청에 의해 접수 취소한 경우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환부청구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부한 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반환청구----------.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제36조의2(우편물 주소등의 변경 및 환부청구)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환부를 발송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 | 제36조의2(우편물 주소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 발송인 또는 수취인---------- -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 ---------- |

| | |
|---|---|
| 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신 설> | 1. 우편물 발송인은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 청구 |
| <신 설> | 2. 우편물 수취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물에 한해 수취 주소 변경 청구 |
|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 (생 략) |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우편물의 범위) (현행과 같음) |
|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② (생 략) |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 | ③ ---------- 제43조제1호, 제5호 및 제10호---------- ----------. ----- 제43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등기우편물---------- |

| | |
|---|---|
|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br><신 설> | ----------<br>----------<br>----------<br>----------<br>----------.<br>④ 제3항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
|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2. (생 략)<br>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수취인의 일시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br>----------<br>----------<br>----------.<br>1. ~ 2. (현행과 같음)<br>3. 수취인의 일시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거나,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

| | |
|---|---|
|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0.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수취인의 일시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공동주택 내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에 배달하는 경우. 다만,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 설> | 11. 제36조의2제2호에 따라 수취인이 수취주소를 변경 청구한 경우로서 수취인이 변경 청구한 곳으로 배달하는 경우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
|---|---|
| 연 락 처 | (044) 200 - 8218 |